

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
사용시간 실적 자료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제출기업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	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
[illegible]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제16항에 따라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.

이
한
도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이 서식은 [별지 제8호의9서식]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"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"에 '사용'이라고 적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.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.
-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사용시간을 작성합니다.

투자시설			투자종류		사용시간				
연번	시설명	투자금액	종류	기술 연번	측정기간	총 사용시간	국가전략기술	신성장·원천기술	일반기술
1	0000	0000	국가전략기술	1.반도체가.	2025.7.1. ~ 2028.12.31.	000시간	000시간	000시간	000시간
2	0000	0000	국가전략기술	1.반도체나.	2025.7.1. ~ 2028.12.31.	00시간	00시간	00시간	00시간

- "⑫ 종류"란: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적습니다.
- "⑬ 기술연번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 신성장·원천기술의 범위 또는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참고하여 투자한 연구·시험용 시설의 연구개발 대상에 해당하는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.
- "⑮ 측정기간"란: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(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5년 7월 1일)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.
- "⑯ 총 사용시간"란: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총 사용시간(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)을 적습니다.
- "⑰ 국가전략기술"란: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적습니다.
- "⑱ 신성장·원천기술"란: 해당 시설을 신성장·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적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·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·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봅니다.
- "⑲ 일반기술 등"란: 총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및 신성장·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(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)을 적습니다.